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452호 2016. 5. 12(목)

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2016-494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변경 공고 -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5 / 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452호(2)

공 고

사천시 공고 제2016-494호

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변경 공고

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(공회전의 제한) 및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3조(제한지역 지정 등)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5월 12일

사 천 시 장

□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변경

연번	대상	시설명	소재지 및 시설규모 변경		비고
			변경전	변경후	
1	터미널	사천시의 버스터미널	사천읍 진삼로 1468	사천읍 옥산로 120	소재지 이전
			3,305m ²	3,630m ²	